

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15. 12. 18.

사회건설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가. 제출일자 : 2015년 11월 12일

나. 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 : 2015년 11월 19일

라. 상정일자 : 제192회 영등포구의회 2015년도 제2차 정례회
제7차 사회건설위원회(2015.12.9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복지국장 박춘은)

가. 제안이유
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개정·시행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“수급(권)자, 차상위계층, 최저생계비” 등 관련 용어를 인용하였거나 자격을 부여한 우리구 자치법규(조례) 중 미개정시 추가적인 재원소요가 예상되어 수급(권)자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는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복지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일괄 개정대상 조례

-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등 총 5개 조례

○ 주요 개정사항

- “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” 및 “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”를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“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”로 개정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시행령 제3조 개정에 따라 “최저생계비 100분의 20”을 “기준중위소득 50퍼센트” 로 개정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 : 이태선)

- 본 조례안은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개정에 따라 법령상의 수급권자, 차상위계층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는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.

○ 일괄 개정대상 조례는

-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」
-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」
-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」
-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, 수집·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」
-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」 등 총 5개 조례임.

○ 주요 개정내용은,

-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

례」에서는 대상자를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5조의 수급권자에 해당되는 않는 차상위계층에서 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되지 않는 차상위계층으로 변경하고,

법 시행령 제3조의 개정에 따라 차상위계층의 정의를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00분의 120 이하인 자를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인 사람으로 변경함.

- 그 외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, 수집·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」 등 4개의 조례는 수수료감면 및 면제대상자 중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 5조 규정의 수급권자를 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로 변경함.

○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이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생계를 보장함으로써 빈곤을 완화하고 자립을 지원해 왔으나,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는 각종 급여가 지급되는 반면 탈수급의 경우 지원이 전무한 상황이 발생하는 등 현행 제도의 한계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이에 법을 개정함에 따라 급여수급권자의 범위를 급여의 종류별로 별도로 규정하고 맞춤형 급여체계를 실시함.

따라서 이 조례안은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서 정한 수급(권)자, 차상위계층 등의 용어를 인용하였거나 자격을 부여한 총 5개의 현행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수수료 면제·감면 및 지원대상자를 명확하게 정비하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제 107 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연월일 : 2015. 11.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 이유
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개정·시행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“수급(권)자, 차상위계층, 최저생계비” 등 관련 용어를 인용하였거나 자격을 부여한 우리 구 자치법규(조례) 중 미개정시 추가적인 재원소요가 예상되어 수급(권)자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는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복지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2. 주요 내용

가. 일괄 개정대상 조례

-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등 총 5개 조례

나. 주요 개정사항

- “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5조” 및 “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”를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“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·의료 급여 수급자”로 개정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시행령 제3조 개정에 따라 “최저생계비 100분의 20”을 “기준중위소득 50퍼센트” 로 개정

3. 참고 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5조, 제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

나. 예산 조치 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사항

- (1) 규제심사 : 심사실시(대상사무 없음)
- (2) 부패영향평가 : 평가실시(원안 동의)
- (3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평가실시(원안 동의)

라. 기타 사항

- (1) 입법예고(2015.10.01 ~ 10.21. 20일간) 결과 : 의견없음

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”를 “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”로 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인 자”를 “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퍼센트 이하인 자”로 한다.

제2조(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3호 중 “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5조에 따른 수급자”를 “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”로 한다.

제3조(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1조제1항제1호 중 “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5조에서 정한 수급권자”를 “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”로 한다.

제4조(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, 수집·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, 수집·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호 중 “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5조에서 정한 수급권자”를 “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”로 한다.

제5조(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호 중 “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”를 “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”로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유효기간) 이 조례는 2016년 1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